



삼일회계법인

요약본

# 알기 쉬운 싱가포르·홍콩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2025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요약본은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만 요약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2024년 11월 4일 발행된 '알기 쉬운 싱가포르  
홍콩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2025' 완전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 버전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완전판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

S/N: 2511A-BK-002

©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  
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 Contents

<b>머리말</b>	3	<b>제2부 컴플라이언스</b>	141
<b>제1부 세법</b>	5	<b>제1편 투자 환경</b>	142
<b>제1편 세법별·항목별 비교</b>	6	<b>제2편 회사 설립 절차</b>	144
1.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Profits Tax	7	제3편 외부 감사 External Audit	145
2.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37	제4편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156
3.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61	제5편 회사 지원 서비스 Corporate Support Service	159
4. 상속세와 증여세 Inheritance Tax & Gift Tax	75	제6편 상장 Initial Public Offering, IPO	162
5.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77	제7편 상법	164
6. 국제조세 International Taxation	82	제8편 고용 관련법	178
7. 취득세 Acquisition Tax	96	제9편 공정거래법	188
8. 인지세 Stamp Duty	97	제10편 주요 정부기관	189
9. 재산세 Property Tax	100	제11편 금융기관 관련 규정	191
10. 관세 및 내국세 등 Custom Duty and Taxes	102	제12편 외환제도	194
11. 기타 세금 Other Taxes	104	<b>참고문헌</b>	290
12. 세무조사 Tax Investigation	111		
13. 조세쟁송 Tax dispute	113		
14. 조세 일반행정 Tax Administration	115		
<b>제2편 산업별 세무 포인트</b>	119		
<b>제3편 자회사 vs 지점 vs 연락사무소 (세법 적용 비교)</b>	125		
<b>제4편 거주용 부동산 관련 세제</b>	127		
<b>제5편 생활 속 세금</b>	128		
<b>제6편 단계별 체크리스트</b>	130		
<b>제7편 세금과 관련된 법정기한</b>	136		

## 약어 목록

IRAS: 싱가포르 국세청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MAS: 싱가포르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GX: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Singapore Exchange)

ACRA: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감독국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SFRS: 싱가포르 채택 국제회계기준 (Singapor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GD: 싱가포르 달러 (Singapore Dollar)

IRD: 홍콩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

HKMA: 홍콩 금융관리국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SFC: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HKEX: 홍콩 증권거래소 (Hong Kong Exchange)

HKICPA: 홍콩 공인회계사회 (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KFRS: 홍콩 채택 국제회계기준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KD: 홍콩 달러 (Hong Kong Dollar)

YA: 세금이 계산되고 부과된 연도 (Year of Assessment)

ECI: 예상 과세표준 (Estimated Chargeable Income)

NoA: 납부고지서 (Notice of Assessment)

## 머리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로서, 서울 면적의 1.15배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저력을 가진 나라이다. 1인당 GDP가 USD 8만이 넘고, 전 세계 글로벌 회사 Headquarter들의 각축장이며, 치안이 매우 안전하고 교육 여건 또한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홍콩은 크게 홍콩섬, 구룡반도, 신계 그리고 262개의 외곽 섬들로 이루어진 중국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로서, 서울 면적의 1.8배의 작은 나라임에도 서양과 동양이 만나 빛어낸 고유의 문화를 지닌 역동적인 국제도시이다. 1인당 GDP가 USD 5만이 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손꼽히는 무역강국이자,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이런 강점으로 전 세계 수많은 주재원 및 기업인들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내수 경제 규모가 워낙 작아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 기업들을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유인하지 않으면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싱가포르 정부와 홍콩 정부는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해 왔다. 정치적으로 싱가포르는 강력한 집권체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으며, 홍콩은 최근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일국 양제’의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사법 제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해 왔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에게 수많은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문화 습득에 대한 거부감이 기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외국인들이 현지인들과 무리 없이 동화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환경적으로도 청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현재의 반열에 올라서기까지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중 간결하고 명확한 조세 제도와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단연 큰 몫을 했음에 틀림없다. 조세 제도와 컴플라이언스 규정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글로벌 회사들이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진출할 때 Tax planning과 정부에 대응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또한, 선진국 대비 경쟁력 있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납세자 친화적이어서 기업들이 세무당국과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과 싱가포르 및 홍콩의 세법과 컴플라이언스를 일목 요연하게 비교 분석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무 담당자, 싱가포르와 홍콩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핵심 세무 지식과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또한 한국의 세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한국, 싱가포르 및 홍콩 세법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조세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제도가 익숙한 이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3국 비교 형식을 채택하였지만 개념 및 제도가 너무 다른 부분은 단순 비교가 쉽지 않았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다루다보니 세세한 내용까지 서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이 책의 내용이 싱가포르와 홍콩,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로의 사업 진출 및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제1부  
세 법



## 제1편 세법별·항목별 비교

### 1.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Profits Tax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과세대상기간	사업연도 <sup>1</sup> 라고 함.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Financial Year, FY와 일치함	Basis Period라고 함.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Financial Year, FY와 일치함 (예: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Basis Period라고 함.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Financial Year, FY와 일치함 (예: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신고 및 부과연도	해당사항 없음	Year of Assessment <sup>YA</sup> 라고 함	Year of Assessment <sup>YA</sup> 라고 함. IRD의 결산월이 3월 말이기 때문에 양개 연도로 표시됨 (예: 2024/25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으로 함)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일반적인 소득 관련하여 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내국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2. 외국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	일반적인 소득 관련하여 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내국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송금된 소득 2. 외국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일반적인 소득 관련하여 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내국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2. 외국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홍콩은 역내소득 On shore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Territorial source principle 방식이므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실익이 일반적으로 없음. 하지만 법인의 세무상 거주자 여부가 GloBE 규칙 및 HKMTT 적용에 중요하기 때문에 2025년 세법개정시, 일반적인 목적상 다음의 법인은 홍콩의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1. 홍콩에서 설립·구성된 경우 Incorporated/ constituted in Hong Kong  2. 홍콩 외부에서 설립·구성되었지만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되는 경우 Normally managed or controlled in Hong Kong

1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기간은 억년 또는 정부의 예산회계에 맞추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지만, 그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역외소득 Offshore profit	한국은 Territorial source principle 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p>1. 싱가포르는 ① 싱가포르 내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② 외국에서 싱가포르 내로 보내지는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수정된 속지주의 Modified Territorial source principle 방식임<sup>2</sup></p> <p>2. 일부 싱가포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수익이 싱가포르 내로 반입되더라도 비과세함<sup>3</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배당수익</li> <li>② 싱가포르 국외 지점 Branch의 수익</li> <li>③ 싱가포르 국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소득</li> </ul> <p>3.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싱가포르 역외발생 자본소득 Capital gain 을 싱가포르 내로 반입한 경우 과세대상임 (2024년 1월 1일 발생분부터)<sup>4</sup></p>	<p>홍콩은 역내소득 On shore business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Territorial source principle 방식임</p> <p>1. 기본원칙: 납세의무자의 이익창출을 위한 활동이 역내 On shore인 것만 과세. 선행적이고 부수적인 활동 Antecedent and incidental activities 및 주요 활동을 수행한 자가 누구인지 Agency principle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p> <p>2. 수익별 적용<sup>5</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매매수익 Trading profits: 매도계약과 매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장소(둘다 역외여야 면세). 전 프로세스상의 실질에 따라 Totality of facts 과세됨</li> <li>② 서비스수익 Service income: 서비스 활동이 수행되었던 장소</li> <li>③ 제조수익 Manufacturing profits: 생산 활동이 수행되었던 장소</li> <li>④ 부동산임대수익 Rental income from real property: 부동산 장소</li> <li>⑤ 주식처분이익: 상장주식은 주식 거래소, 비상장주식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장소</li> <li>⑥ 이자수익: 이자수익 부분 참조</li> <li>⑦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 부분 참조</li> </ul> <p>3. 개정FSIE제도: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개정FSIE제도가 적용됨. 특정 홍콩 역외원천소득 Specified Foreign-Sourced Income(0)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주식, 기타자산, IP), 특정IP소득은 우선적으로 별도 방식으로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수익이 홍콩 내로 반입되는 경우에 과세하는 수정된 속지주의 방식이 적용됨</p>
과세소득 범위	순자산증가설 <sup>6</sup> 에 입각함	소득원천설 <sup>7</sup> 에 입각함	소득원천설 <sup>8</sup> 에 입각함

2 Section 10(1) the Income Tax Act

3 Section 13(8), 13(9) the Income Tax Act

4 Section10l of Income Tax Act

5 실무해석(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DIPN) 제21호

6 모든 순자산증가액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설

7 특정 원천에서 경상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설

8 특정 원천에서 경상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설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p><b>결산서당 당기순이익</b></p> <p>(+)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p> <hr/> <p>=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p> <p>(-)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p> <hr/> <p>= 과세표준</p> <p>(x) 세율</p> <hr/> <p>= 산출세액</p> <p>(-)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p> <hr/> <p>= 총부담세액</p> <p>(-)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p> <hr/> <p>= 차감납부할세액</p>	<p><b>법인세차감전순이익</b></p> <p>Net Profit / (Loss) Before Tax</p> <p>± Add (Less)</p> <hr/> <p>= 조정 순이익</p> <p>Adjusted Trading Profit / (Loss)</p> <p>± Balancing Charge/Interest Income Subtotal</p> <p>(-) Less Capital Allowance Utilised Subtotal</p> <p>(-) Less Approved Donations Utilised</p> <hr/> <p>= 비과세소득 공제 전 과세표준</p> <p>Chargeable Income Before Exempt Amount</p> <p>(-) Less Tax Exemption</p> <hr/> <p>= 비과세소득 공제 후 과세표준</p> <p>Chargeable Income After Exempt Amount</p> <p>(x) Tax Rate</p> <hr/> <p>= 산출세액 Gross Tax Payable</p> <p>(-) 세액감면 Tax reduction (-) 세액공제 Tax Credit Allowance</p> <hr/> <p>= 결정세액 Tax payable</p> <p>(-) 예납세액 Less Provisional Profit Tax Paid (-) 기납부세액 Less tax set off</p> <hr/> <p>= 차감납부할 세액</p> <p>Additional Tax Payable / (Tax to Be Discharged)</p>	<p><b>법인세차감전순이익</b></p> <p>Net Profit / (Loss) Before Tax</p> <p>± Add (Less)</p> <hr/> <p>= 조정 이익</p> <p>Assessable Profits / (Adjusted Loss)</p> <p>(-) 이월결손금</p> <p>Loss brought forward from previous period</p> <hr/> <p>= 조정 순이익</p> <p>Net Assessable Profit</p> <p>(x) 세율 Tax Rate</p> <hr/> <p>= 산출세액 Gross Tax Payable</p> <p>(-) 세액감면 Tax reduction (-) 세액공제 Tax Credit Allowance</p> <hr/> <p>= 결정세액 Tax payable</p> <p>(-) 예납세액 Less Provisional Profit Tax Paid (-) 기납부세액 Less tax set off</p> <hr/> <p>= 차감납부할 세액</p> <p>Additional Tax Payable</p>
일반세율	<p>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써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법인지방 소득세율로 별도의 납부 의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억원 이하: 9%(0.9%)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19% (1.9%)]</li> <li>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1.9%)</li> <li>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2.1%)</li> <li>3천억원 초과: 24% (2.4%)</li> </ul>	<p>17% 단일세율</p>	<p>단일세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16.5%</li> <li>법인이 아닌 경우(예: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등): 15%</li> </ol> <p>단, 연결재무제표 내 Those with a connected entity에서 1개 회사에 대해 최초 HKD 2m 까지는 50%인 8.25%, 7.5% 각각 적용 가능</p>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비과세소득	<p>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법: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li> <li>조세특례제한법: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소득<sup>9</sup></li> </ol>	<p>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이득<sup>Capital Gain</sup> (단,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역외에서 발생, 싱가포르로 반입한 자본이득은 과세대상)<sup>10</sup></li> <li>Section 13A and Section 13F of the Income Tax Act에 의한 특정 해운소득<sup>Shipping Income</sup></li> <li>국외원천배당<sup>Foreign-Sourced Dividend</sup></li> <li>국외지점이익<sup>Foreign Branch Profits</sup></li> <li>국외원천용역소득<sup>Foreign-Sourced Service Income</sup></li> <li>Section 13W of the Income Tax Act에 의한 보통주 처분으로 인한 이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율 최소 20%, 보유기간 최소 24개월 조건 등</li> <li>2026년 1월 1일부터 피투자회사가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우선주도 포함, 그룹기준으로 관련 조건 충족여부 판단</li> </ol> </li> </ol>	<p>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콩역외소득<sup>Offshore Profits</sup> (개정FSIE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li> <li>자본이득<sup>Capital Gain</sup></li> <li>배당<sup>Dividend</sup> (역내원천배당 또는 개정 FSIE제도하에서 면제요건을 만족하는 배당)</li> </ol>
자본이득 Capital gain	<p>자본이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임</p>	<p>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면 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 Section 13Z of the Income Tax Act에 의한 보통주 처분으로 인한 이득 먼저 조항에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li> <li>상기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거래의 증표<sup>Badges of Trade</sup>,<sup>11</sup>에 의거하여 영업이익<sup>Trading Gain</sup>인지 자본이득<sup>Capital Gain</sup>인지 파악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의 성질<sup>Nature of subject matter</sup></li> <li>소유한 기간<sup>Length of ownership</sup></li> <li>거래의 빈도<sup>Frequency of transactions</sup></li> <li>보조적 활동<sup>Supplementary work done</sup></li> <li>처분 사유<sup>Circumstances of realisation</sup></li> <li>취득당시의 의도<sup>Motivate</sup></li> <li>자금의 출처<sup>Mode of financing</sup></li> <li>기타<sup>Other factors</sup></li> </ol> </li> <li>검토 결과 영업이익<sup>Trading Gain</sup>에 해당되면 과세하고 자본이득<sup>Capital Gain</sup>에 해당하면 비과세함</li> </ol>	<p>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면 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 조세확실성 강화제도<sup>Tax Certainty Enhancement Scheme</sup>에 해당되는지 검토<sup>12</sup>: 홍콩주식을 홍콩 내에서 거래한 경우 Onshore sourced equity disposal gains 5% 이상의 주식을 24개월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처리 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Badge of trade에 따라 검토함</li> <li>거래의 증표<sup>Badges of Trade</sup>에 의거하여 영업이익<sup>Trading Gain</sup>인지 자본이득<sup>Capital Gain</sup>인지 파악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당시의 사용의도<sup>Profit-seeking motive at the time of acquisition</sup></li> <li>처분대상의 성질<sup>Subject matter of the commodity disposed</sup></li> <li>소유한 기간<sup>Length of ownership</sup></li> <li>유사거래의 빈도<sup>Frequency of similar transactions</sup></li> <li>보조적 활동<sup>Supplementary work done on the property</sup></li> <li>처분 사유<sup>Circumstances leading to the disposal</sup></li> <li>이외에 자금의 출처<sup>Mode of financing</sup>, 가치증대활동<sup>Enhancement for Realisation Principle</sup>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li> </ol> </li> </ol>

계속

9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0 Section 10L of Income Tax Act

11 Trading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Taxable-and-Non-Taxable-Income/Determining-the-Existence-of-a-Trade/>)12 [https://www.ird.gov.hk/eng/tax/bus\\_taxcertainty.htm#a01](https://www.ird.gov.hk/eng/tax/bus_taxcertainty.htm#a01)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p>3. 검토 결과 영업이익<sup>Trading Gain</sup>에 해당되면 과세하고 자본이득<sup>Capital Gain</sup>에 해당되면 비과세함</p> <p>4. 개정FSIE제도 하에서는 해외 자본자산<sup>Capital Assets</sup>의 매각이 발생했더라도 더이상 자본이득으로서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p>
배당소득	<p>1. 배당소득은 원천이 국내·외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함</p> <p>2. 이중과세 조정</p> <p>① 국내법인주주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를 조정함</p> <p>② 국내법인주주가 다른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함</p>	<p>1. 과세 여부</p> <p>(1) 내국법인(싱가포르 거주자에 한함)으로부터의 배당: 비과세</p> <p>(2)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하기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비과세</p> <p>① 해당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함</p> <p>② 해당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이미 과세가 이루어졌어야 함</p> <p>③ 국세감독관<sup>Comptroller</sup>이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가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p> <p>2. 이중과세 조정</p> <p>① 국내법인주주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함</p> <p>② 국내법인주주가 다른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sup>Foreign Tax Credit, FTC</sup>'로 이중과세를 조정함</p>	<p>1. 홍콩역내 원천으로부터의 배당: 비과세</p> <p>2. 홍콩역외 원천으로부터의 배당(개정 FSIE제도): 하기 두가지 요건 중 하나 만족 시 비과세</p> <p>(1) 경제적실질요건<sup>Economic Substance Requirement</sup>: 순수지분보유회사와 비순수지분보유회사는 요건이 다름</p> <p>(2) 참여면제요건<sup>Participation Exemption Requirement</sup>: 하기 모든 조건 만족</p> <p>① 5%이상의 주식을 12개월 이상 보유</p> <p>② 배당수의 또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sup>Underlying Profits</sup>이 해당 국가에서 15% 이상 과세대상이어야 함. 적용 세율은 헤드라인 세율<sup>Headline Rate</sup> (관할권의 가장 높은 법인세율, 조특법상 낮은세율 적용 시 그 낮은세율)로 판단함</p> <p>③ Anti-hybrid mismatch rule 또는 Main purpose rule 검토 후에도 참여면제요건을 만족</p> <p>3. 이중과세 조정</p> <p>① 홍콩거주법인<sup>Hong Kong Resident Person</sup>이 받는 배당소득 중 비과세인 소득은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함</p> <p>② 홍콩거주법인<sup>Hong Kong Resident Person</sup>이 홍콩역외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비과세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sup>Foreign Tax Credit, FTC</sup>'로 이중과세를 조정함</p>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한국의 법인세 확정신고는 싱가포르에서는 'Filing of Form C-S/ C'라 함. 12월 말 법인의 경우 익년 1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함	12월 말 법인의 경우 <sup>D code</sup> 세무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매년 8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매년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함

## 2.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납세의무자 범위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p>1. 거주자: 국내원천소득<sup>13</sup> 및 국외원천소득<sup>14</sup> 모두에 대해 과세함 Worldwide Tax System (글로벌 과세제도)</p> <p>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p>	<p>1. 거주자<sup>Resident</sup></p> <p>(1) 일반적으로 국외원천소득<sup>Foreign-Sourced Income</sup>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sup>Domestic-Sourced Income</sup>에 대해서만 과세함<sup>Territorial Tax System (원천지 과세제도)</sup></p> <p>(2) 특정 과세대상 국외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파트너십을 통해 수령한 소득</li> <li>② 해외 근로수행이 싱가포르에서의 본연의 업무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경우(예: Regional Sales Manager)</li> <li>③ 싱가포르 정부를 대신해 수행되는 해외 근로</li> <li>④ 기타</li> </ul> <p>2. 비거주자<sup>Non-resident</sup>: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p>	<p>1. 거주자: 국내원천소득</p> <p>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p> <p>홍콩은 역내소득<sup>On shore</sup>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sup>Territorial source principle</sup> 방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음</p>
소득금액 계산방식	<p>1. 종합과세<sup>15</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자소득</li> <li>② 배당소득</li> <li>③ 사업소득</li> <li>④ 근로소득</li> <li>⑤ 연금소득</li> <li>⑥ 기타소득</li> </ul> <p>2. 분류과세<sup>16</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퇴직소득</li> <li>② 양도소득</li> </ul>	<p>1. 분리과세소득 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로소득<sup>Employment income</sup></li> <li>② 배당소득<sup>Dividends</sup></li> <li>③ 이자소득<sup>Interest</sup></li> <li>④ 임대소득<sup>Rent for property</sup></li> <li>⑤ 로열티, 수수료, 투자수익 등 소득<sup>Royalty, Charge, Estate/Trust income</sup></li> <li>⑥ 기타소득</li> </ul>	<p>1. 신고는 한번에 하나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동산임대소득세<sup>Property Tax</sup></li> <li>② 근로소득세<sup>Salaries Tax</sup>: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함</li> <li>③ 사업소득세<sup>Profits Tax</sup></li> </ul> <p>2. 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종합과세<sup>Personal Assessment</sup>로 과세될 수 있음</p>

13 소득발생의 원천 또는 이를 결정할 기준이 국내에 있는 소득으로서 자산의 소재지, 사업활동의 수행장소, 용역의 제공장소, 권리의 사용장소 또는 지급자의 소재지 등에 의해서 결정됨

14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

15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임

16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종합소득과 구분되어 각 소득별로 과세하는 것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소득금액 계산 구조	<p><b>총수입금액<sup>17</sup></b></p> <p>(-) 필요경비</p> <p>= <b>소득금액<sup>18</sup></b></p> <p>(-) 소득공제</p> <p>= <b>과세표준</b></p> <p>× 세율</p> <p>= <b>산출세액</b></p> <p>(-) 세액감면</p> <p>(-) 세액공제</p> <p>= <b>결정세액</b></p> <p>(+) 가산세액</p> <p>= <b>총결정세액</b></p> <p>(-) 기납부세액</p> <p>= <b>차감납부세액</b></p>	<p><b>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b></p> <p>(-) <b>근로소득공제 Employment Expenses</b></p> <p>= <b>순 근로소득 Net employment Income</b></p> <p>(+) 사업소득 등 Trade, Business, Profession or Vocation</p> <p>(+) 기타소득 등 Other Income (Dividends, Interest, Rent from Property 등)</p> <p>= <b>소득금액 Total Income</b></p> <p>(-) 기부금 공제 Approved Donations</p> <p>= <b>과세대상소득 Assessable Income</b></p> <p>(-) 인적공제 Personal Reliefs</p> <p>= <b>과세표준 Chargeable Income</b></p> <p>(×) 세율 Tax Rate</p> <p>= <b>산출세액 Tax payable on Chargeable Income</b></p> <p>(-) Parenthood Tax Rebate</p> <p>= <b>결정세액 Net Tax Payable</b></p>	<p><b>근로소득 Assessable Income</b></p> <p>(-) 필요경비공제 Allowable Deduction</p> <p>(-) 특별공제 Concessional deductions</p> <p>= <b>순 근로소득 Net assessable income</b></p> <p>(-) 인적공제 Personal Allowance</p> <p>= <b>과세표준 Net chargeable Income</b></p> <p>(×) 세율 Tax Rate</p> <p>= <b>산출세액 Tax payable on Chargeable Income</b></p> <p>(-) 세액감면 Tax reduction</p> <p>= <b>결정세액 Net Tax payable</b></p> <p>(-) 예납세액 Less Provisional Profit Tax Paid</p> <p>(-) 기납부세액 Less tax set off</p> <p>= <b>차감납부할 세액 Additional Tax Payable</b></p>
거주자에 대한 세율	<p>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괄호 안은 개인 지방소득세율로 별도의 납부의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백만원(과세표준) 이하: 6% (0.6%)</li> <li>14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 15% (1.5%)</li> <li>50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24% (2.4%)</li> <li>88백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3.5%)</li> <li>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8%)</li> <li>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4%)</li> <li>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2% (4.2%)</li> <li>10억원 초과: 45% (4.5%)</li> </ul>	<p>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YA2024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GD 20,000 이하: 0%</li> <li>SGD 20,000 초과 30,000 이하: 2%</li> <li>SGD 30,000 초과 40,000 이하: 3.5%</li> <li>SGD 40,000 초과 80,000 이하: 7%</li> <li>SGD 80,000 초과 120,000 이하: 11.5%</li> <li>SGD 120,000 초과 160,000 이하: 15%</li> <li>SGD 160,000 초과 200,000 이하: 18%</li> <li>SGD 200,000 초과 240,000 이하: 19%</li> <li>SGD 240,000 초과 280,000 이하: 19.5%</li> <li>SGD 280,000 초과 320,000 이하: 20%</li> <li>SGD 320,000 초과 SGD 500,000 이하: 22%</li> <li>SGD 500,000 초과 SGD 1,000,000 이하: 23%</li> <li>SGD 1,000,000 초과: 24%</li> </ul>	<p>1. <b>근로소득세 Salaries tax:</b> 표준세율 또는 초과누진세율 적용. 낮은 금액으로 최종 과세액 결정</p> <p>① <b>표준세율:</b> 과세액 = 순근로소득 ×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KD 5,000,000 이하: 15%,</li> <li>HKD 5,000,000 초과: 16% (YA 2024/25부터 적용)</li> </ul> <p>② <b>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b> 과세액 = 과세표준(순근로소득-인적공제) ×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KD 50,000 이하: 2%</li> <li>HKD 50,000 초과 100,000 이하: 6%</li> <li>HKD 100,000 초과 150,000 이하: 10%</li> <li>HKD 150,000 초과 200,000 이하: 14%</li> <li>HKD 200,000 초과: 17%</li> </ul> <p>2. <b>부동산임대소득세 Property tax:</b> 15%</p> <p>3. <b>사업소득세 Profits tax:</b> 15%로 단일세율. 최초 HKD 2m까지는 50%인 7.5% 적용가능</p>

### 3.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 홍콩은 부가가치세가 없음

항목	한국	싱가포르
공식 명칭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sup>GST</sup>
세율	1977년 도입 이후 계속 10%를 유지하고 있음	<p>세율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4.1~2002.12.31: 3%</li> <li>• 2003.1.1~2003.12.31: 4%</li> <li>• 2004.1.1~2007.6.30: 5%</li> <li>• 2007.7.1~2022.12.31: 7%</li> <li>• 2023.1.1~2023.12.31: 8%</li> <li>• 2024.1.1부터: 9%</li> </ul>
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p>1. 과거 기준</p> <p>① 매 분기별로 직전 12개월 동안의 과세대상 공급이 SGD 1백만을 초과한 경우</p> <p>② 기말 기준으로 과세대상 공급이 SGD 1백만을 초과한 경우</p> <p>2. 미래 기준: 향후 12개월 동안의 과세대상 공급이 SGD 1백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재화의 공급시기	<p>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으로 함<sup>19</su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li> <li>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li> <li>3. 위 두가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li> </ol>	<p>GST 공급시기는 다음으로 함</p> <p>1. 원칙: 아래 두 날짜 중 빠른 날<sup>20</su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li> <li>② 현금을 수령한 날</li> </ol> <p>2. 특례: The 14–Day Rule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봄)</p>
용역의 공급시기	<p>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으로 함<sup>21</su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li> <li>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li> </ol>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li> <li>2. 공급시기 후 발급특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li> </ol>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19 부가가치세법 제15조

20 싱가포르도 한국과 같이 공급시기 관련하여 '재화의 인도 시', '재화의 이용가능 시' 등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1년 1월 1일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2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4. 상속세와 증여세 Inheritance Tax & Gift Tax

### (1) 싱가포르

2008년 2월 15일 이후로 폐지되었음

### (2) 홍콩

2006년 2월 10일 이후로 폐지되었음

## 5.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이자소득 <small>Interest, commission, fee or other payment in connection with any loan or indebtedness</small>	<p>1.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 14%</li> <li>②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2017년 이전 발행분): 30%</li> <li>③ 비영업대금의 이익: 25%</li> <li>④ 직장공제회조과반환금: 기본세율</li> <li>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것: 45%</li> <li>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li> <li>⑦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5, 9, 14%</li> </ul> <p>2.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이자소득: 14%</li> <li>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li> </ul> <p>3.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 이자소득: 20%</li> <li>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14%</li> </ul>	<p>1. 외국법인<sup>Non-Resident Company</sup>에게 지급하는 경우: 15%<sup>22</sup> (예외: 외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sup>Singapore Branches of Non-Resident Companies</sup>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임)</p> <p>2. 싱가포르 내국법인 및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p>	<p>1.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p> <p>2. 홍콩 내국법인 및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p>
배당소득	<p>1.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li> <li>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li> <li>③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것: 45%</li> <li>④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5, 9, 14%</li> <li>⑤ 그 밖의 배당소득: 14%</li> </ul> <p>2.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14%</p> <p>3.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0%</p>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사업소득	1.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싱가포르는 별도로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없음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단,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소득은 제외
근로소득	1.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매월 분 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sup>23</sup> 적용 ②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비거주 이사 <sup>Non-Resident Directors</sup> 에게 소득지급 시 24%를 원천징수함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단 비거주 연예인 및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사용료 <sup>24</sup> 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0%	소득지급대상 및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sup>25</sup>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10%	소득지급대상 및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sup>26</sup>  1.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4.95% (Two tier 적용구간 시 2.475%) 2. 로열티가 관계사 <sup>Associated party</sup> 에게 지급 되었고, 이전에 홍콩에서 소유된 적이 있었다고 IRD가 판단하는 경우 16.5%
양도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은 Min(①, ②)  ① 지급금액 × 10% ②(지급금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20%	소득지급대상 및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비거주자인 부동산 매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5%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2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4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함(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3항)

25 'Royalty or other lump sum payments for the use of moveable properties' 및 'Payment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scientific, technical, industrial or commercial knowledge or information'를 포함함

26 Section 15(1)(b), 15(1)(ba), 21(A) of the IRO

## 6. 국제조세 International Taxation

항목	싱가포르	홍콩
한국에 주식 투자한 경우	<p>1.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 및 개인이 한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권이 결정됨</p> <p>① (13조 4항)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부동산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한국 과세(단, 상장주식일 경우 싱가포르 과세)</p> <p>② (13조 5항) 25% 이상 직간접 보유 주식 – 한국 내국세법에 따라 한국 과세</p> <p>③ (13조 6항) 이외 한국 주식 – 싱가포르 과세</p> <p>2. 기타 여러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p>	<p>1. 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르면, 홍콩법인 및 개인이 한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권이 결정됨:</p> <p>① (제13조 4항, 5항)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부동산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포함 한국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한국 내국세법에 따라 한국 과세</p> <p>2. 기타 여러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p>

## 7. 취득세 Acquisition Tax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납세대상 항목	<p>1. 부동산</p> <p>① 토지</p> <p>② 건축물</p> <p>2. 부동산에 준하는 것</p> <p>① 차량</p> <p>② 기계장비</p> <p>③ 입목</p> <p>④ 항공기</p> <p>⑤ 선박</p> <p>3. 각종 권리</p> <p>① 광업권</p> <p>② 어업권·양식업권</p> <p>③ 골프회원권</p> <p>④ 승마회원권</p> <p>⑤ 콘도미니엄회원권</p> <p>⑥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p> <p>⑦ 요트회원권</p>	<p>별도의 취득세 제도는 없고 인지세가 취득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인지세 Chapter 참조)</p>	<p>별도의 취득세 제도는 없고 인지세가 취득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인지세 Chapter 참조)</p>

## 8. 인지세 Stamp Duty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납세대상	<p>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p> <p>3. 기타</p>	<p>1. 부동산 Property</p> <p>(1) 취득 시.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거주용 Residential</li> <li>② 비거주용 Non-Residential</li> </ul> <p>(2) 처분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거주용 Residential</li> <li>② 산업용 Industrial</li> </ul> <p>2. 지분증권 Shares 취득 시</p> <p>3. 부동산 Property 임차 시</p>	<p>인지세법<sup>27</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대상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홍콩소재 부동산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Hong Kong: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매매 또는 임차</li> <li>2. 홍콩 주식 Hong Kong stock: 홍콩회사 주식의 매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홍콩 주식으로 간주됨</li> <li>3. 홍콩 무기명문서 Hong Kong bearer instruments 발행</li> <li>4. 항목 1,2,3 복본 Duplicates과 상대방 Counterparts</li> </ol>
과세표준	정액세(일정하게 규정된 세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별도로 없음	<p>1. 부동산 Proper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득 시: 구입가격 Purchase Price 과 시장가치 Market Value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li> <li>② 처분 시: 실제 거래가격 Actual Price 과 시장가치 Market Value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li> </ul> <p>2. 지분증권 Shares 취득 시: 구입가격 Purchase Price 또는 지분가치 Value of the Shares 중 높은 금액</p> <p>3. 부동산 임차: 연간 임차료 Average Annual Rent, AAR 의 금액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SGD 1,000 이하: 인지세 면제함</li> <li>② SGD 1,000 이상 &amp; 임차기간 4년 이하: (임차기간 중 총 임차료) × 0.4%</li> <li>③ SGD 1,000 이상 &amp; 임차기간 4년 초과: (임차기간 중 연평균 임차료 Average Annual Rent) × 4 × 0.4%</li> </ul>	<p>1. 홍콩소재 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매매: 판매금액 Consideration이나 시장가치 Market value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li> <li>② 임차: 총금액 및 임차료</li> </ul> <p>2. 홍콩주식: 이전대가 Consideration나 지분가치 Value of the shares 중 높은 금액.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는 실무적으로 순자산장부가액에 부동산평가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활용됨(연결 기준)</p> <p>3. 홍콩무기명증서: 시장가치</p>

## 9. 재산세 Property Tax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4. 선박 5. 항공기	대표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sup>28</sup> 1. 단독주택 Houses 2. 건물 Building 3. 토지 Land 4. 공동주택 Tenements	대표적 재산세는 다음과 같음 1. 재산세 <sup>29</sup> : 재산세법 Rating Ordinance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콩 소재 모든 부동산 <sup>Property</sup> 에 부과됨 2. 정부임대세 <sup>Government rent, 30</sup> : 토지(토지 위의 부동산 포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 홍콩은 법률적으로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장기임대를 하는 형태임
과세표준	1.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공정시장가액비율) 2. 주택: 시가표준액 × 60% (공정시장 가액비율) 3.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연간가치 <sup>Annual Value, AV, 31</sup>	매년 새로운 지정일 <sup>Designated valuation reference date</sup> (예: YA 2025/26년도의 경우 2024년 10월 1일에 측정한 가치를 2025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에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재산세 목적의 가치 <sup>Rateable value</sup> 를 측정

## 10. 관세 및 내국세 등 Custom Duty and Taxes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관세	1. 대상 ① 모든 수입 물품 ② 수출 관세는 없음  2. 관세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기재되어 있음	1. 대상 ① HS code 22류 중 특정 주류. 자세한 품목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sup>32</sup> ② 수출 관세는 없음  2. 관세율: 리터당 SGD 16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없음

28 Section 6(1) of Property Tax Act

29 Cap. 116 Rating Ordinance

30 Cap. 515 Government Rent (Assessment and Collection ) Ordinance

31 IRAS가 매년 연간가치(Annual Value, AV)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IRAS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함

32 <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duties-and-dutiable-goods/list-of-dutiable-goods>

## 11. 기타 세금 Other Taxes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p>1. 원칙: 매각대금의 0.35%<sup>33</sup></p> <p>2. 예외<sup>34</sup></p> <p>① 유기증권시장: 0% (농어촌 특별세 0.15% 추가됨), 단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0.08%,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0.05%,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0.03%</p> <p>② 코스닥시장: 0.15%, 단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0.2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0.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0.18%</p> <p>③ 코넥스시장: 0.10%</p>	<p>1. 비상장주식 거래 시 구입가격 Purchase price 또는 지분가치 Value of the shares 중 높은 금액의 0.2% 인지세가 발생함. 계약서에 따라 인지세 부담자가 결정됨.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매수자가 부담</p> <p>2. 싱가포르증권거래소 SGX를 통해서 상장주식 거래 시 대표적 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음</p> <p>① 정산수수료 Clearing Fee: 계약금액의 0.0325%<sup>35</sup></p> <p>② 매매수수료 Trading Fee: 계약금액의 0.0075%</p>	<p>1. 비상장주식 거래시 매각금액 Consideration이나 주식가치 Value의 0.2% (매수자, 매도자 연대책임) 인지세가 발생함</p> <p>2. 홍콩증권거래소 HKEX를 통해서 상장주식 거래 시 대표적 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음<sup>36</sup></p> <p>① 인지세: 매각대금의 0.2% (매도자, 매수자 각각 0.1%, 일부 항목 제외<sup>37</sup>)</p> <p>② 홍콩증권선물위원회 거래세 SFC Transaction Levy: 매각대금의 0.0027%</p> <p>③ 매매수수료 Trading Fee: 매각대금의 0.00565% (Securities Market Maker<sup>SMM</sup> transactions는 별도의 면제비율 적용)</p>

33 증권거래세법 제8조

3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조

35 <https://www.sgx.com/securities/clearing-information>36 [https://www.hkex.com.hk/Services/Rules-and-Forms-and-Fees/Fees/Securities-\(Hong-Kong\)/Trading/Transaction?sc\\_lang=en](https://www.hkex.com.hk/Services/Rules-and-Forms-and-Fees/Fees/Securities-(Hong-Kong)/Trading/Transaction?sc_lang=en)37 [https://www.hkex.com.hk/Services/Trading/Securities/Stamp-Duty-Reporting-and-Payment/Securities-exempt-from-Hong-Kong-stamp-duty?sc\\_lang=en](https://www.hkex.com.hk/Services/Trading/Securities/Stamp-Duty-Reporting-and-Payment/Securities-exempt-from-Hong-Kong-stamp-duty?sc_lang=en)

## 12. 세무조사 Tax Investigation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세무조사의 종류	<p>1.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sup>38</sup></p> <p>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p> <p>2. 수시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sup>39</sup></p> <p>①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②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p> <p>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p> <p>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p> <p>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p> <p>3.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p>	<p>1. 일반조사<sup>Tax Audit</sup>: 세무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오류를 바로잡아 납세자들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임</p> <p>2. 심층조사<sup>Tax Investigation</sup>, <sup>40</sup>: 조세포탈이 의심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수행됨</p>	<p>홍콩은 선납부 후조사 시스템임<sup>Assess First Audit Later system, AFAL</sup>.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함.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없으나 사안별로 다음의 절차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짐<sup>41</sup></p> <p>1. 서면조사<sup>Desk audit</sup>: 세무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예: 전년대비 차이가 큰 항목, Offshore 등)에 대해서 질문서<sup>IRD Enquiry letter</sup>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 질문서는 수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조사가 이 단계에서 종료됨</p> <p>2. 현장조사<sup>Field audit</sup>: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보고서 의견이 변형된 경우</li> <li>② 비현실적으로 낮은 매출액 및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li> <li>③ 세무신고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li> <li>④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않는 경우</li> <li>⑤ 중요한 자료를 요청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li> </ul> <p>3. 심층조사<sup>Tax investigation</sup>: 조세포탈이 의심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수행됨. 보통 세무조사가 시작된 해 이전의 6개년에 대해서 조사하나,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10개년으로 조사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p>

38 국세기본법 제81조 6의 2항

39 국세기본법 제81조 6의 3항

40 협의의 세무조사를 의미함

41 실무해석 제11호

## 13. 조세 쟁송 Tax dispute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조세불복제도 (행정소송이전)	<p>1. 이의신청</p> <p>① 청구 대상기관: 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p> <p>② 청구기한: 90일 이내에 신청</p> <p>③ 결정기한: 30일 이내에 결정</p> <p>2. 심사청구</p> <p>① 청구 대상기관: 국세청장</p> <p>②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청구 가능</p> <p>③ 청구기한: 90일 이내에 청구</p> <p>④ 결정기한: 90일 이내에 결정</p> <p>3. 심판청구</p> <p>① 청구 대상기관: 조세심판원장</p> <p>②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청구 가능</p> <p>③ 청구기한: 90일 이내에 청구</p> <p>④ 결정기한: 90일 이내에 결정</p> <p>4. 감사원 심사청구</p> <p>① 청구 대상기관: 감사원장</p> <p>② 이의 신청 없이도 바로 청구 가능</p> <p>③ 청구기한: 90일(180일) 이내에 청구</p> <p>④ 결정기한: 3개월 이내에 결정</p>	<p>1. 이의신청 Objecting to NoA</p> <p>① 청구 대상기관: IRAS</p> <p>② 청구기한: NoA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p> <p>③ 결정기한: 마지막 Correspondence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p> <p>2. 재정부 이의신청 Appeal to the Income Tax Board of Review, MOF</p> <p>① 청구 대상기관: 소득세 심판위원회 Income Tax Board of Review</p> <p>② 이의신청 이후에 청구 가능</p> <p>③ 청구기한: Notice of Refusal to Amend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p>	<p>1. 이의신청 Objection 청구 대상기관: IRD</p> <p>2. 청구기한: 납부고지서 NoA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p> <p>3. 결정기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세무담당자는 납세의무자와 합의하여 부과를 무효로하거나, 증액, 감액을 결정함.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세무국장이 최종결정 Commissioner's Determination 함. 이 결정에 불복하면 납세자는 항소 Appeals 절차를 진행하게 됨</p>

## 14. 조세 일반행정 Tax Administration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국세부과 제척기간 Limitation	<p>1. 일반적인 세목</p> <p>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10년 (역외거래는 15년)</p> <p>②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역외거래는 10년)</p> <p>③ 기타: 5년 (역외거래는 7년)</p> <p>2. 상속세 및 증여세</p> <p>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15년</p> <p>② 기타: 10년</p>	<p>1. 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Claim 관련: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p> <p>2. 사기 Fraud 와 관련된 경우 제척기간 한도가 없음</p>	<p>1.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년 이내, 즉 당해 과세기간 포함 7년 이내</p> <p>2. 사기 Fraud 및 고의적인 탈세 Wilful evasion 의 경우 10개년으로 조사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p>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Negative Prescription	<p>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p> <p>2. 그 이외: 5년</p>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해당 과세기간으로부터 5년간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7년간

## 제2편 산업별 세무 포인트

### (1) 싱가포르

산업	항목	세목	내용	비고
공통	혜택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다양한 비과세 항목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소득<sup>Capital gain</sup>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li> <li>2.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li> <li>3. 특정 주류를 제외하고 관세 없음 (개별소비세 과세)</li> <li>4. 상속세, 증여세 없음</li> <li>5. 비거주자에게 지급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천징수세액 없음</li> </ul>

### (2) 홍콩

산업	항목	세목	내용	비고
공통	혜택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다양한 면세 항목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홍콩은 역내소득<sup>On shore business</sup>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sup>Territorial source principle</sup> 방식임. 개정FSIE제도의 도입으로 수정된 속지주의 방식이 적용됨 (2023년 부터 적용)</li> <li>2. 자본소득<sup>Capital gain</sup>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li> <li>3.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 (개정FSIE제도하의 과세대상 제외)</li> </ul>
		특정되지 아니함	간편한 세법항목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가세 없음</li> <li>2. 관세 없음 (일부 개별소비세 제외)</li> <li>3. 상속세 없음 (2006년 폐지)</li> <li>4. 원천징수세액 없음 (사용료소득 및 연예인 및 운동선수에 대한 지급을 제외)</li> </ul>

## 제3편 자회사 vs 지점 vs 연락사무소 (세법 적용 비교)

### (1) 싱가포르

항목	자회사 Subsidiary	지점 Branch	연락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여부	싱가포르 거주자로 간주	싱가포르 비거주자로 간주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법인소득세 적용	자회사와 지점 간 큰 차이 없음		상동
제2차 납세의무	모회사가 2차 납세의무 없음	본점이 2차 납세의무 없음	상동

### (2) 홍콩

항목	자회사 Subsidiary	지점 Branch	연락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홍콩 세법상 거주자 여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자로 인정. 2023년 6월 12일부터 IRD가 세무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검토할 때, 기존의 실질적 요건에 근거한 발급이 아닌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였음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법인소득세 적용	자회사와 지점간 큰 차이 없음		상동
제2차 납세의무	모회사가 2차 납세의무 없음	본점이 2차 납세의무 없음	상동

## 제4편 거주용 부동산 관련 세제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p>인지세 Stamp Duty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인지세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성됨</p> <p>1. 기본 취득 인지세 Buyer's Stamp Duty, BSD</p> <p>2. 추가 취득 인지세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ABSD</p>	<p>인지세 Stamp Duty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인지세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성됨</p> <p>1. 기본 인지세인 종가인지세 Ad Valorem Stamp Duty, AVD</p> <p>2. 특별한 조건 하의 매수자인지세 Buyer's Stamp Duty, BSD: 2024년 2월 28일 이후 폐지</p>
부동산 보유 시	<p>1. 재산세</p> <p>2. 종합부동산세 (일정요건 충족 시)</p>	재산세	<p>대표적 재산세는 다음과 같음</p> <p>1. 재산세 Rates: 재산세법 Rating Ordinance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콩 소재 모든 부동산Property에 부과됨</p> <p>2. 정부임대세 Government rent: 토지(토지 위의 부동산 포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 홍콩은 법률적으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장기임대를 하는 형태임</p>
부동산 처분 시	<p>1. 법인</p> <p>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p> <p>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정요건 충족 시)</p> <p>③ 부가가치세 (일정요건 충족 시)</p> <p>2. 개인: 양도소득세 (일정요건 충족 시)</p>	<p>기본 처분 인지세 Seller's Stamp Duty, SSD: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함</p>	<p>인지세 Stamp Duty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인지세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성됨</p> <p>1. 기본 인지세인 종가인지세 Ad Valorem Stamp Duty, AVD</p> <p>2. 특별한 조건 하의 특별인지세 Special Stamp Duty, SSD: 2024년 2월 28일 이후 폐지</p>

## 제5편 생활 속 세금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주류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등	<p>1. 관세 (수입 품목일 경우)</p> <p>2. 주세</p> <p>3. 교육세</p> <p>4. 부가가치세</p>	<p>1. 관세 (일부 품목의 경우)</p> <p>2. Excise Duty</p> <p>3. GST</p>	개별소비세 Excise Duty (일부 품목의 경우)

## 제6편 단계별 체크리스트(1) 법인 설립 시

세목	싱가포르	홍콩
법인소득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형태 결정: 법인 or 지점 or 연락사무소 등 여부에 따라 법인소득세 해당 항목이 달라짐</li> <li>동남아시아 진출 시 싱가포르에 RHQ를 세우는 것이 Tax Benefit이 있는지 확인(투자 구조 검토) 필요</li> <li>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증 Certificate of residence을 받기 위해 싱가포르에 실질 Substance을 구축할 지에 대한 분석 필요</li> <li>해당 산업에 Tax Incentive가 있는지 파악 필요</li> <li>글로벌최저한세에 따라 모회사 국가에서 추가적인 과세 대상이 될 싱가포르 구성기업들 Singapore constituent entities of an in-scope MNE group에 대해서, 싱가포르 자체적으로 15%까지 추가 최저한세 Minimum top-up Tax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됨 (2025년부터 시행). 이에 따른 최적화된 세무 포지션을 검토해야 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형태 결정: 법인 or 지점 or 연락사무소 등 여부에 따라 법인소득세 해당 항목이 달라짐</li> <li>중국 비즈니스를 위해 홍콩에 Holding co를 세우는 것에 Tax Benefit이 있는지 확인(투자구조 검토) 필요</li> <li>홍콩 세무상 거주자증 Certificate of residence을 받기 위해 홍콩에 실질 Substance을 구축할 지에 대한 분석 필요. 2023년 6월 12일부터 IRD가 세무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검토할 때, 기존의 실질적 요건에 근거한 발급이 아닌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였음. 여전히 각 국 세무당국에서 실질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li> <li>홍콩역외소득 Offshore scheme으로 신고할지 파악</li> <li>해당 산업에 Tax Incentive가 있는지 파악 필요</li> <li>개정FSIE제도에 따라, 특정 홍콩역외원천소득(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주식, 기타자산, IP), 특정IP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서 경제적실질요건 및 참여면제 요건을 만족하는 구조로 설립할지 분석 필요</li> <li>글로벌최저한세에 따라 모회사 국가에서 추가적인 과세 대상이 될 홍콩 구성기업들 Hong Kong constituent entities of an in-scope MNE group에 대해서, 홍콩 자체적으로 15%까지 추가 최저한세 Minimum top-up Tax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됨(2025년부터 시행). 이에 따른 최적화된 세무 포지션을 검토해야 함</li> </ol>
개인소득세	임직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 파악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직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파악 필요</li> <li>임원의 경우 직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할지 분석이 필요함</li> <li>주택수당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 것인지 결정</li> </ol>
GS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GST 등록을 해야 되는지 여부 확인 필요, 만약 강제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자발적 등록이 유리한지 여부 파악 필요</li> <li>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필요</li> </ol>	해당사항 없음
국제조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 형태 결정: 법인 or 지점 or 연락사무소 등</li> <li>싱가포르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중간지주회사를 세울 경우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위험 사전에 파악</li> <li>한국에 있던 영업조직 및 특정 거래를 싱가포르로 이관 시, 한국과세의 세무위험을 미리 파악 필요</li> <li>싱가포르 회사의 기능 및 위험에 맞게 이전가격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파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 형태 결정: 법인 or 지점 or 연락사무소 등</li> <li>홍콩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중간지주회사를 세울 경우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위험 사전에 파악</li> <li>한국에 있던 영업조직 및 특정 거래를 홍콩으로 이관 시, 한국과세의 세무위험을 미리 파악 필요</li> <li>홍콩회사의 기능 및 위험에 맞게 이전가격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파악</li> </ol>

## 제7편 세금과 관련된 법정기한

	싱가포르	홍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1: 4분기 GST 신고 및 납부</li> <li>1/31: 재산세 신고 및 납부</li> <li>1/31: 기부금을 후원받는 단체들의 국세청으로의 기부금 내역 전자신고</li> </ul>	
2월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Form IR8A/IR8E (법인 입장에서의 종업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li> <li>3/1: Commission 지급액의 국세청으로의 전자신고</li> <li>3/31: ECI 신고 (12월 말 법인의 경우)</li> <li>3/31: DTT 신고 (해당사항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31: CbCR notification 신고 (해당사항 있는 경우)</li> <li>3/31: HKMTT 신고 (해당사항 있는 경우)</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5: 개인소득세 서면신고</li> <li>4/18: 개인소득세 전자신고</li> <li>4/30: 1분기 GST 신고 및 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 첫 영업일: IRD에서 법인세신고서 Profits tax return BIR 57 발행</li> <li>4월 첫 영업일: IRD에서 고용주신고서 BIR 56A, BIR 56B를 회사에게 발행</li> <li>4월 말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 고용주신고서 제출</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초: IRD에서 개인소득세 신고서 Tax return—Individuals BIR 60을 각 개인에게 발행함</li> <li>5월 말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 개인소득세신고서 제출 (사업소득 없고 세무대리인 없는 경우)</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 말: DTT 신고 notification (해당사항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 말: HKMTT 신고 notification (해당사항 있는 경우)</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31: 2분기 GST 신고 및 납부</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31: CbCR notification 신고 (12월 말 법인으로서 CbCR 제출의무가 있으나, IRAS로부터 통지받지 못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5: 법인세신고서 제출 (12월 말 법인으로서 세무대리인 있는 경우)</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30: Master file 및 Local file 작성 완료 (IRD 요청 시 제출)</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31: 3분기 GST 신고 및 납부</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30: 법인소득세 확정신고 (12월 말 법인의 경우)</li> <li>이전가격 관련 Documentation 작성 완료 (해당사항 있는 경우)</li> </ul>	
12월		



## 제2부 컴플라이언스

## 제1편 투자환경

항목	싱가포르	홍콩
인구	604만 명 <sup>42</sup>	753만 명 <sup>43</sup>
면적	734.3km <sup>2</sup>	1,110km <sup>2</sup>
기후	연평균기온 32°C, 연 강수량 1,956mm	아열대 몬순 기후로서 월평균기온 16°C(1월)에서 29°C(7월), 연 강수량 2,398mm
언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sup>4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용어: 중국어, 영어</li> <li>상용어: 광동어</li> </ul>
통화단위	싱가포르 달러 (SGD)	홍콩 달러 (HKD)
환율제도	관리 변동환율제	페그제 (USD 1 = HKD 7.75~7.85)
1인당 GDP	USD 84,734 (2023년) <sup>45</sup>	USD 50,532 (2023년) <sup>46</sup>

## 제2편 회사 설립 절차

항목	싱가포르	홍콩
설립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 상호 예약</li> <li>회사 등록</li> <li>회사 설립증 <small>Certificate of Incorporation</small> 발급</li> <li>은행 계좌 개설</li> <li>해당 사업의 라이선스 신청</li> <li>GST 등록 (일정조건 만족 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 준비: 회사명, 주주 및 이사, 자본금, 법인간사, 주소지 등</li> <li>회사의 설립 준비 및 등록: 1주일 이내</li> <li>설립서류 발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업등록국 <small>Company registry</small>: 설립허가증 <small>Certificate of incorporation</small>, 설립신청서 <small>NNC1</small></li> <li>② 세무국 <small>IRD</small>: 사업자등록증 <small>Business Registry, BR</small></li> <li>③ 정관 <small>Article of Association, AoA</small>, 법인인장, 주주명부 <small>Share certificate</small></li> </ul> </li> <li>은행 계좌 개설</li> <li>해당 사업의 라이선스 신청 (금융업 등)</li> </ol>

42 <https://www.singstat.gov.sg/modules/infographics/population>

43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25년 6월말 기준

44 드라비다어족의 남부 드라비다어파에 속함. 인도의 15개 공용어 중 하나로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주에서 쓰이며 사용 인구는 약 4,600만명임

45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SG>

46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HK>

## 제3편 외부 감사 External Audit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주식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sup>47</su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권상장법인<sup>48</sup>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li> <li>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li> <li>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li> <li>4.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li> <li>(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li> <li>(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li> <li>(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li> </ol> </li> </ol> </li> </ol>	다음의 외부감사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휴면회사 <sup>Dormant companies</sup> 를 제외하고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회계감사기준	Korean Standards on Auditing <sup>KSA</sup>	Singapore Standards on Auditing <sup>SSAs</sup>	Hong Kong Standards on Auditing <sup>HKSAs</sup>

4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8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감사보고서 공시(또는 제출) 기한	<p>1. 상장회사</p> <p>① 감사보고서 공시 기한: 정기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p> <p>② 사업보고서 공시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p> <p>③ 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p> <p>2. 외감대상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의 사업보고서 공시 기한</p> <p>① 원칙: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p> <p>② 예외: K-IFRS 미적용 회사 중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의 연결 기준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추가 제출</p> <p>3. 외감대상 비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p> <p>(1) 감사보고서 공시 기한: 정기 주주총회일 후 2주 이내</p> <p>(2) 연결 감사보고서 공시 기한</p> <p>① K-IFRS 적용: 정기 주주총회일 후 2주 이내</p> <p>②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p>	<p>1. 일반회사</p> <p>(1) 회사의 이사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송부해야 함<sup>49</sup></p> <p>(2) 주주총회 개최 14일 이전에 주주에게 감사 받은 재무제표가 송부되어야 함<sup>50</sup>. 주주총회 개최기한은 다음과 같음<sup>51</sup></p> <p>① 공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p> <p>② 비공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p> <p>③ 일정요건 충족 시 주주총회기한 연장 가능</p> <p>2. 은행: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가 MAS에 제출되어야 함<sup>52</sup></p> <p>3. 펀드관리회사(Fund Management Company, FMC):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가 MAS에 제출되어야 함<sup>53</sup></p>	<p>1. 주주총회로의 제출기한: 모든 회사<sup>54</sup></p> <p>(1) 회사의 이사는 정해진 기한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보고서 Reporting documents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송부해야 함</p> <p>(2)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면 주주총회 개최 21일 이전에 주주에게 송부. 주주총회 개최기한은 다음과 같음</p> <p>① 기타회사(예, 공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p> <p>② 사적회사(Private Company 또는 보증에 의한 유한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p> <p>2. 증권거래소의 제출기한: 상장회사<sup>55</sup></p> <p>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반기보고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는 없음</p> <p>(1) 메인보드 Main board</p> <p>①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p> <p>② 반기보고서(Half-yearly report):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p> <p>(2) 창업시장 GEM</p> <p>①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p> <p>② 반기보고서(Half-yearly report):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p> <p>③ 분기보고서(Quarterly report):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p> <p>3. 외부기관 제출</p> <p>① 은행: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가 HKMA에 제출되어야 함<sup>56</sup></p> <p>② 증권회사 등: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가 SFC에 제출되어야 함<sup>57</sup></p> <p>4. 이외에 세무신고기간(12월 말 법인의 경우 8월 15일) 및 본사 해외직접 투자 연간보고기간(보통 5월 말)이 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p>

49 Section 201(1)(a) of the Companies Act

50 Section 201(9)(a) of the Companies Act

51 Section 175(1) of the Companies Act

52 Section 26(2) of the Banking Act

53 Section 107(1)(b)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Act

54 회사법 제429조, 제430조, 제610조

55 [https://www.hkex.com.hk/Listing/Rules-and-Guidance/Other-Resources>Listed-Issuers/Continuing-Obligations-and-Annual-Listing-Fees/Continuing-Obligation-Fees?sc\\_lang=en](https://www.hkex.com.hk/Listing/Rules-and-Guidance/Other-Resources>Listed-Issuers/Continuing-Obligations-and-Annual-Listing-Fees/Continuing-Obligation-Fees?sc_lang=en)

56 Section 60 of the Banking Ordinance

57 Section 156(1)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 제4편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회계기준 종류	1. K-IFRS <sup>58</sup> 2. 일반기업회계기준 3. 중소기업회계기준 4. 특수분야회계기준 (신탁업자, 집합 투자기구 등)	1. FRS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 SFRS(I) Singapor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national): 상장회사는 반드시 적용 3. SFRS for Small Entities 4. Charities Accounting Standard	1. HKFRS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 HKFRS-PE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Private Entities, <sup>59</sup> 3. SME-FRS Small and Medium-sized Entity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sup>60</sup>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회사와 회계법인이 직접 감사보고서 한 부마다 서명할 필요 없음 2. 의견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이사는 이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직접 한 부마다 서명해야 함 2. 의견문단: 회사법 The Company Act, Chapter 과 싱가포르 회계기준 <sup>FRS</sup> 또는 SFRS(I)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Properly drawn up 되었으며, 진실하고 공정하게 표시하고 Give a true and fair view 있습니다 3. 이사보고서에는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나 재무제표와의 중요한 불일치사항 발견 시 별도로 기술해야 함	1. 회사의 이사는 이사보고서(1인)와 재무상태표(2인 이상, 단일이사의 경우 그 1인)에,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직접 한 부마다 서명해야 함 <sup>61</sup> 2. 의견문단: 홍콩회계기준 <sup>HKFRS</sup> 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하게 표시 Give a true and fair view 되었으며, 홍콩회사법 Hong Kong 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Properly prepared 되었습니다 3. 이사보고서에는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나 재무제표와의 중요한 불일치사항이 발견 시 별도로 기술해야 함 <sup>62</sup>

## 제5편 회사 지원 서비스 Corporate Support Service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Corporate Secretary 강제 임명 여부	해당사항 없음	1. 싱가포르 회사는 회사비서역 Company secretary 을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함 <sup>63</sup> 2. 비서역은 싱가포르 거주자이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이 수행 가능 3. 비서역의 주요역할을 다음과 같음 ① 주주명부 등 회사의 주요장부 보관 및 유지 ② 이사회 의사록, 주총 의사록, 연차신고서 등 법정문서의 준비 ③ 이사변경, 유상증자, 주소지 변경 등 ACRA에 법정 신고절차 수행 ④ 기타 정부, 주주, 이사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협조	1. 홍콩회사는 회사비서역 Company secretary 을 선임해야 함 <sup>64</sup> 2. 개인의 경우 통상 홍콩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홍콩에 등기된 사무소가 있거나 사업장소가 있어야 함 3. 비서역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주주명부 등 회사의 주요장부 보관 및 유지 ② 이사회 의사록, 주총 의사록, 연차신고서 등 법정문서의 준비 ③ 이사 변경, 유상증자, 주소지 변경 등 기업등록국에 법정 신고절차 수행 ④ 기타 홍콩정부와 법인의 대리인 업무 제공

58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orea-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K-IFRS)

59 [http://app1.hkicpa.org.hk/ebook/HKSA\\_Members\\_Handbook\\_Master/volumell/hkfrspe.pdf](http://app1.hkicpa.org.hk/ebook/HKSA_Members_Handbook_Master/volumell/hkfrspe.pdf)60 <https://www.hkicpa.org.hk/~media/HKICPA-Website/Members-Handbook/volumell/smefrf2019.pdf>

61 회사법 제387조, 제391조, 제409조

62 회사법 제406조

63 <https://www.acra.gov.sg/how-to-guides/setting-up-a-local-company/appointing-directors-company-secretary-and-other-key-personnel>

64 회사법 제474조

## 제6편 상장 Initial Public Offering, IPO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장 요건	<p>주식시장 별 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음</p> <p>1. KOSPI<sup>65</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규모 요건</li> <li>② 분산 요건</li> <li>③ 경영성과 요건</li> <li>④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li> </ul> <p>2. KOSDAQ<sup>66</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설립 후 경과연수</li> <li>② 규모</li> <li>③ 지분의 분산</li> <li>④ 자본 상태</li> <li>⑤ 감사의견</li> <li>⑥ 경영성과</li> <li>⑦ 이익규모, 매출액 &amp; 시가총액</li> <li>⑧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제한</li> <li>⑨ 기타 외형요건</li> </ul> <p>3. KONEX<sup>67</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권의 양도제한</li> <li>② 감사의견</li> <li>③ 지정자문인</li> <li>④ 중소기업 여부</li> <li>⑤ 액면가액</li> </ul>	<p>주식시장 별 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음</p> <p>1. Mainboa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규모 요건</li> <li>② Financial Position and Liquidity</li> <li>③ Shareholding Spread</li> <li>④ No. of Shareholders</li> <li>⑤ Directors and Management</li> </ul> <p>2. Catal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Sponsorship</li> <li>② Quantitative Criteria</li> <li>③ Shareholding Spread</li> <li>④ No. of Shareholders</li> <li>⑤ Directors and Management</li> </ul>	<p>주식시장 별 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음<sup>68</sup></p> <p>1. Mainboard</p> <p>(1) 재무적 요건: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익·시가총액<sup>Market cap</sup> 기준: 2가지 모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3년 총 이익 HKD 80m 이상, 상장 직전 이익 HKD 35m 이상</li> <li>b. 시가총액이 HKD 500m 이상</li> </ul> </li> <li>② 매출액·시가총액 기준: 2가지 모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최근연도 매출 HKD 500m 이상</li> <li>b. 시가총액이 HKD 4b 이상</li> </ul> </li> <li>③ 매출액·시가총액·영업현금흐름 기준: 모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최근연도 매출 HKD 500m 이상</li> <li>b. 시가총액이 HKD 2b 이상</li> <li>c. 3년 총 영업현금흐름 HKD 100m 이상</li> </ul> </li> </ul> <p>(2) 최소공개비율: 25% (시가총액 HKD 10b 이상인 경우 15%)</p> <p>(3) 주주분산요건: 최소 300명</p> <p>(4) 경영진연속성: 최근 3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진 유지</p> <p>(5) 지배주주연속성: 최근 1년 동일한 지배주주 유지</p> <p>2. GEM</p> <p>(1) 재무적 요건: 2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sup>69</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가총액·영업현금흐름 기준: 2가지 모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시가총액이 HKD 150m 이상</li> <li>b. 최근 2년 총 영업현금흐름 HKD 30m 이상</li> </ul> </li> <li>② 시가총액·매출액·R&amp;D 규모 기준: 3가지 모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시가총액이 HKD 250m 이상</li> <li>b. 최근 2년 총 매출 HKD 100m 이상, 2년간 매출 증가</li> <li>c. 최근 2년 총 R&amp;D 지출 30m 이상, 각 회계연도에 발생한 R&amp;D 지출은 같은 기간 총 영업지출의 15% 이상 <a href="#">계속</a></li> </ul> </li> </ul>

65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101/LST04010101.jsp>

66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100/LST04020100.jsp>

67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30100/LST04030100.jsp>

68 [https://www.hkex.com.hk/Join-Our-Market/IPO/Listing-with-HKEX?sc\\_lang=en](https://www.hkex.com.hk/Join-Our-Market/IPO/Listing-with-HKEX?sc_lang=en)

69 <https://www.hkex.com.hk/-/media/HKEX-Market/Listing/Getting-Started/GEM-Listing-Financial-Eligibility-eng.pdf>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2) 최소공개비율: 25% (시가총액 HKD 10b 이상인 경우 15%) (3) 주주분산요건: 최소 100명 (4) 경영진연속성: 최근 2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진 유지 (5) 지배주주연속성: 최근 1년 동일한 지배주주 유지

## 제7편 상법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회사의 종류	<p>회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sup>70</su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합명회사</li> <li>2. 합자회사</li> <li>3. 유한책임회사</li> <li>4. 주식회사</li> <li>5. 유한회사</li> </ol> <p>이 밖의 설립형태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락사무소</li> <li>2. 지점 (영업소)</li> </ol>	<p>대표적인 회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 Company</li> <li>① 상장회사</li> <li>② 비상장회사</li> <li>2.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li> <li>3. 합작기업 Partnership</li> <li>4.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li> <li>5.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LP</li> <li>6.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li> </ol> <p>이 밖의 설립형태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RO</li> <li>2. 외국법인의 지점 Branch of the foreign company</li> </ol>	<p>회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sup>71</su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한책임회사 Unlimited Company</li> <li>①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li> <li>② 파트너십 Partnership</li> <li>2. 유한책임회사 Limited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증에 의한 유한책임 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자본금 없이 각 주주는 회사 정관에 정해진 한도까지만 책임을 짐</li> <li>(2) 주식에 의한 유한책임 회사 Company Limited by Shares: 각 주주는 주식을 한도로 책임을 짐. 공개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개회사 Public Company: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뉨 (회사법상 분류는 아님)</li> <li>② 사적회사 Private Company: 주주 50명 이하</li> </ul> </li> </ul> </li> </ol> <p>이밖의 설립형태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회사법상 회사로 분류되지 않으나 세법상 분류됨</li> <li>2. 지점 Branch, 회사법상으로는 외국회사 Non-Hong Kong Company로 분류됨</li> </ol>
무액면주식 No Par Value Shares	액면주식 <sup>72</sup> 과 무액면주식 모두 발행 가능함.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주식 발행은 불가능함 <sup>73</sup>	싱가포르는 2006년 1월 30일 이후로 무액면주식만 발행 가능함 <sup>74</sup>	홍콩은 2014년 3월 3일 이후로 무액면주식만 발행 가능함 <sup>75</sup>

70 상법 제170조

71 회사법 제7-11조

72 주식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되, 발행가액 총액 중에서 액면총액은 자본금으로 계상하여 주주의 배당재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본충실과 채권자보호를 위해 고안된 제도

73 상법 제329조

74 Section 62A(1) of the Companies Act, Companies (Amendment) Act 2005

75 회사법 제135조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배당의 종류 및 의결 방법	<p>1. 현금배당<sup>76</sup></p> <p>(1) 결산배당</p> <p>① 원칙: 주주총회의 보통결의</p> <p>② 예외: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sup>77</sup></p> <p>(2) 중간배당: 이사회의 결의</p> <p>2. 주식배당<sup>78</sup>: 주주총회의 보통결의</p> <p>3. 현물배당<sup>79</sup>: 정관에 정할 수 있음</p>	<p>1. 현금배당</p> <p>① 결산배당: 주주총회 결의</p> <p>②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p> <p>2. 주식배당, 현물배당: 회사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보통 정관상 회사의 이익이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p>	<p>1. 결산배당: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할 수 있음. 그러나 배당은 이사가 제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p> <p>2. 중간배당: 회사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보통 정관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이 충분히 정당성을 기진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주주에게 중간 배당<sup>Interim dividend</sup>을 할 수 있음</p> <p>3. 현물배당: 회사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보통 정관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이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물배당<sup>Non-cash distributions</sup>을 할 수 있음</p>

## 제8편 고용 관련법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비자의 종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음	<p>싱가포르 고용비자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뉨</p> <p>1. Employment Pass<sup>EP</sup> <sup>80</sup></p> <p>①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p> <p>② 고정 월 소득이 최소 SGD 5,6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함<sup>81</sup></p> <p>③ 소득조건심사 후에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sup>COMPASS</sup> 심사를 통과해야 EP를 발급받을 수 있음</p> <p>2. S Pass<sup>SP</sup></p> <p>① 대학 학사나 전문대학 학위소지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p> <p>② 고정 월 소득이 최소 SGD 3,3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함<sup>82</sup></p> <p>3. Work Permit<sup>WP</sup></p> <p>① 건설, 제조, 해양 산업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p> <p>② 최소 급여 조건은 없음</p>	<p>취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홍콩 비자는 다음과 같음</p> <p>1. General Employment Policy<sup>GEP</sup></p> <p>① 홍콩에서 근무할 예정인 근로자에 해당. 특정국가는 신청안됨</p> <p>②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홍콩의 교육 기관이나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 또는 그에 준하는 우수한 학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홍콩에서 적용 가능한 희소한 특별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함</p> <p>2.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sup>IANG</sup></p> <p>① 홍콩 현지 대학을 졸업한 외국학생이 홍콩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 특정국가는 신청 안됨</p> <p>② 대학 졸업 후 취업여부 관계없이 1년 동안 체류 가능하며, 연장 시 취업 증명이 필요함</p>

76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 3

77 상법 제462조

78 상법 제462조의 2

79 상법 제462조의 4

80 Eligibility for Employment Pass of MOM Singapore

81 EP 발급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나이,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최소요건금액이 점차 높아짐. Finance services 산업 분야는 최소 요건 SGD 6,200

82 SP 발급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요건금액이 점차 높아짐. Financial service 산업 분야는 최소 요건 SGD 3,800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p>3.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sup>Tech TAS</sup></p> <p>① 특정 자격을 갖춘 기업·연구소들이 해외 및 중국 본토 기술인재를 받아들여 신속한 R&amp;D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돋고자 함      ② 회사별 인원수 제한 있음</p> <p>이외에도 홍콩 회사의 대주주로서 현지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투자비자<sup>Investment as entrepreneurs</sup> 신청이 가능하며, 18세 이상 30세까지 제한된 인원 내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sup>Working holiday</sup> 신청이 가능함. 최근 글로벌 인재 및 기업가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자본투자비자<sup>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sup> 및 고급인재비자<sup>Top Talent Pass Scheme</sup>를 신설함</p>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사전통보기간	<p>1. 근로계약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함<sup>83</sup></p> <p>2. 근로계약 종료 전 근로자의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의무 없음<sup>84</sup></p> <p>3. 근로계약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sup>85</sup></p> <p>4. 근로계약 종료 전 근로자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1. 근로계약 종료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사전통보가 있는 경우      ①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름      ② 예외: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사전 통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p> <p>2. 고용기간에 따른 사전 최소통지기간은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음      ① 26주 미만: 1일      ② 26주 이상 2년 미만: 1주      ③ 2년 이상 5년 미만: 2주      ④ 5년 이상: 4주</p> <p>3. 근로계약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미통지 보상급여<sup>Compensation in Lieu of Notice ('Notice Pay')</sup>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p> <p>4. 근로계약 종료 전 근로자의 사전통보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미통지보상 급여<sup>Compensation in Lieu of Notice ('Notice Pay')</sup>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함</p>	<p>기간에 따라 다음의 통보기간이 필요함<sup>86</sup></p> <p>1. 수습기간 중<sup>Probation period</sup>      (1) 1개월 이내: 통보기간 불필요      (2) 1개월 이후      ① 통보기간을 합의한 경우: 합의에 따라 (7일 이상)      ② 통보기간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7일 이상</p> <p>2. 수습기간 이후 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경우      ① 통보기간을 합의한 경우: 합의에 따라 (7일 이상)      ② 통보기간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상</p> <p>3. 통보기간 내에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조기종료에 따른 보상금<sup>Payment made in lieu of notice</sup>을 지급해야 함. 고용계약 종료 통보일 이전 12개월의 월평균급여 × 통보기간</p>

83 근로기준법 제26조

84 근로기준법 제7조

85 근로기준법 제26조

86 [https://www.labour.gov.hk/eng/faq/cap57d\\_whole.htm](https://www.labour.gov.hk/eng/faq/cap57d_whole.htm)

## 제9편 공정거래법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경쟁법(Competition Act (Cap 50C), 2004년 최초 실행 이후 수차례 개정	경쟁법(Competition Ordinance (Cap 619),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됨
주요 내용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1. The Key Prohibitions 2. Regulations and Orders 3. CCCS Guidelines / Practice Statement / Guidance Note	1. The First Conduct Rule prohibits anti-competitive agreements; 2. The Second Conduct Rule prohibits abuse of market power; 3. The Merger Rule prohibits anti-competitive mergers and acquisitions

## 제10편 주요 정부기관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정부기관 구성	정부기관 구성은 다음과 같음 <sup>87</sup>  1. 19부 2. 3처, 3위원회 3. 18청 4. 17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구성은 다음과 같음 <sup>88</sup>  1. Ministry: 16개 2. Statutory Board: 65개 3. Organs of State: 10개	정부기관 구성은 다음과 같음 <sup>89</sup>  1. Chief Executive (행정장관) 2. 3사: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일종의 국무총리), Financial Secretary (일종의 경제부총리), Secretary for Justice (일종의 검찰총장) 3. 15국 Bureau 4. 18개 지역구별 위원회
금융기관감독기관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MAS	HKMA (은행), SFC (증권 및 자산운용), HKIA (보험)
세금감독기관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	IRAS	IRD

87 <https://www.gov.kr/portal/orgInfo>

88 <https://www.gov.sg/sgdi/ministries>

89 <https://www.gov.hk/en/about/govdirectory/govchart/index.htm>

## 제11편 금융기관 관련 규정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관련 법률	대표적인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1. 은행법 2. 보험업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1. Banking Act 2. Insurance Act 3. Securities and Futures Act	대표적인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1. Banking Ordinance 2. Insurance Ordinance 3.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대표적인 문서로 업무보고서가 있음	싱가포르 통화청 <sup>MAS</sup> 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음. MAS 웹사이트 참조 <sup>90</sup>	1. 홍콩금융관리국 <sup>HKMA</sup> 에 제출해야 하는 Return이 있음 <sup>91</sup> 2. 홍콩증권선물위원회 <sup>SFC</sup> 에 제출해야 하는 Return이 있음 <sup>92</sup> 3. 홍콩보험관리국 <sup>HKIA</sup> 에 제출해야 하는 Return이 있음 <sup>93</sup>

## 제12편 외환제도

항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개인물품 통관 관련 외화 반출입 한도	USD 10,000 <sup>94</sup> 초과 시 신고해야 함	SGD 20,000 <sup>95</sup> 초과 시 신고해야 함	HKD 120,000 초과 시 신고해야 함 <sup>96</sup>

90 <http://www.mas.gov.sg/Regulations-and-Financial-Stability/Regulations-Guidance-and-Licensing.aspx>

91 <https://www.hkma.gov.hk/eng/key-functions/banking/banking-regulatory-and-supervisory-regime/regulatory-supervisory-framework/submission-of-returns/>

92 <https://www.sfc.hk/web/EN/forms/intermediaries/financial-returns.html>

93 [https://www.ia.org.hk/en/infocenter/forms/returns\\_forms.html](https://www.ia.org.hk/en/infocenter/forms/returns_forms.html)

94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95 Taking Cash In and Out of Singapore of ICA Singapore

96 [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instrument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instruments/index.html)

## 참고문헌

### 1. 공통

- 기획재정부, BEPS 프로젝트 조치 별 대응 방향 (I~IV),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 오윤,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2016)
- BEPS대응지원센터, <http://www.kipf.re.kr/Beps>
- OECD, <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residency/Singapore-Tax-Residency.pdf>
- Worldwide Tax Summaries, <https://www.pwc.com/gx/en/services/tax/worldwide-tax-summaries.html>

### 2. 한국

- 삼일회계법인, 「삼일 IFRS 해설」, 삼일회계법인(2019)
- 공인회계사 윤현철·변호사 흥지운, 「알기 쉬운 개정상법」, 삼일인포마인(2016)
-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2021)
- 국세청, [http://www.nts.go.kr/info/info\\_14\\_01.asp](http://www.nts.go.kr/info/info_14_01.asp)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

### 3. 싱가포르

- 싱가포르 법령정보, <http://sso.agc.gov.sg/>
-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
- 싱가포르 국세청, 「Transfer Pricing Guideline Fifth Edition」
-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customs.gov.sg>
- 싱가포르 육상교통부, <https://www.lta.gov.sg/content/ltaweb/en/roads-and-motoring/owning-a-vehicle/costs-of-owning-a-vehicle/tax-structurefor-cars.html>
- 싱가포르 노동부,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foreign-worker-levy>
- SPRING Singapore, <https://eresources.nlb.gov.sg/webarchives/details/www.spring.gov.sg.Pages.Home.aspx.html>
-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Singapore in Figures, 2017」
- Singapore Statutes Online, <http://statutes.agc.gov.sg/aol/home.w3p>
- Singapore Government Directory, <https://www.gov.sg/sgdi/ministries>
- 국세청, 「싱가포르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2015)
- 전병힐, 「주요국의 조세제도(싱가포르 편)」, 한국조세연구원(2011)

### 4. 홍콩

- 홍콩 정부, <https://www.gov.hk>
- 홍콩 법령정보, <https://www.legislation.gov.hk>
- 홍콩 국세청, <https://www.ird.gov.hk>
- 홍콩 관세청, <https://www.customs.gov.hk>
- 홍콩 기업등록국, <https://www.cr.gov.hk>
- 홍콩 증권거래소, <https://www.hkex.com.hk>
- 국세청,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2015)

## 면책조항

해당 한국어 버전은 한국인 담당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대략적인 번역을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류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재무상태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책자에 포함된 자료는 2025년 9월 말 현재 법규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 싱가포르, 홍콩의 세법(조세조약 포함)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저자 정기욱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PwC Singapore Korea Business Desk 담당 한국 대표(前)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근무(現)  
E. ki-wook.jung@pwc.com  
T. +82-2-709-8873

---

### 저자 성기진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PwC Singapore Korea Business Desk 담당 한국 대표(前)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근무(現)  
E. ki-jin.seong@pwc.com  
T. +82-2-3781-9984

---

### 저자 우종욱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홍콩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홍콩과기대(HKUST) 재무학 석사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근무(前)  
PwC Hong Kong Korea Business Desk 담당 한국 대표(現)  
E. jongwook.woo@hk.pwc.com  
T. +852-2289-1243

---

### 저자 고나운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세무본부 근무(前)  
PwC Hong Kong Tax 근무(現)  
E. alice.n.kauh@hk.pwc.com  
T. +852-2289-6410





삼일회계법인